

의안번호	2216503
의 퇴 인	김남근의원
회 답 일	2026.4.6.
추계번호	26D0137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5,500만원(연평균 3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위원후보추천위원회	40	16	43	40	16	155	3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 (위원후보추천위원회) 신설	국회,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·지명할 위원 후보자(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의 추천을 위하여 위 각 선출·지명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. 선출·지명기관은 위원회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추천위원회는 국회,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·지명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2 (위원후보추천위원회) 신설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·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,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
 - －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의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
 -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
- 추계에서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안 제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, 인권위원 11명, 임기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함
 - 인권위원 11명, 현 인권위원의 남은 임기, 각 인권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횟수를 산정한 후, 위원후보추천위원 당 회의개최횟수는 3회로 가정함
 -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안건검토비 20만원,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총 4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7명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가되는 3명의 추천위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[표 2]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: 2027~2031년

(단위: 건, 명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대통령 지명	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수	1	1	2	1	1	6
	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위원 수	3	3	3	3	3	—
	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	3	3	3	3	3	—
	회의참석수당 단가	0.4	0.4	0.4	0.4	0.4	—
	추가재정소요(A)	4	4	7	4	4	23
국회 및 대법원장 지명	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수	3	1	3	3	1	11
	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위원 수	10	10	10	10	10	—
	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	3	3	3	3	3	—
	회의참석수당 단가	0.4	0.4	0.4	0.4	0.4	—
	추가재정소요(B)	36	12	36	36	12	132
추가재정소요 합계(A+B)		40	16	43	40	16	15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5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위원후보추천위원회	40	16	43	40	16	15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